

-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10. 2.>](#)
- ⑤ 삭제 [<2021. 9. 24.>](#)

제54조 삭제 [<2018. 10. 2.>](#)

제54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[<개정 2019. 3. 12.>](#)

1.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
3.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·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
4.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
[[본조신설 2017. 3. 27.](#)]

[[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의3으로 이동 <2017. 3. 27.>](#)]

제54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5. 12. 22., 2016. 12. 30., 2020. 3. 3.>](#)

1.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: 2017년 1월 1일
2.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: 2017년 1월 1일
3. 제2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: 2017년 1월 1일
4.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: 2017년 1월 1일

5. 삭제 [<2020. 3. 3.>](#)

[[본조신설 2013. 12. 30.](#)]

[[제54조의2에서 이동 <2017. 3. 27.>](#)]

제55조(과태료의 부과)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삭제 [<2018. 10. 2.>](#)

[[전문개정 2009. 4. 30.](#)]

부칙 <제35811호, 2025. 10. 1.>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